

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4. 2. 24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4년 2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1994년 2월 15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4. 2. 24.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박 춘 용)

가. 제 안 이 유

○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청원학생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함.

○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(대통령령 제14042호, '93.12.31.) 에 의거 "교육행정"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○ '91. 3. 1자로 폐교된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593번지에 위치한 미원국민학교 운암분교장을 학생야영장으로 전용코자 청원학생야영장을 설치함 (안 별표 1)

○ 직급명칭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함
(안 제5조)

3. 검토요지

(전문위원 김영만)

1991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미원국민학교 운암분교장을 청소년
야영장으로 활용하려는것은, 폐교된 학교를 재활용하여 청소년들로
하여금 야영·수련활동을 통한 심신수련과 호연지기 함양 및 공동체
의식을 고취,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됨으로써 바람직하며,

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(대통령령 제 14042호, '93.12.31.)에 의거
"교육행정"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직급명칭을 바꾸려는것 또한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토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사 결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
1부.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